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질문 1-1	각종 서식을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p>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서류를 한글프로그램(=워드)로 작성하고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p> <p>이 경우 출원자 성명과 서명 부분은 반드시 자필, 정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외의 다른 제출서류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명과 서명 부분은 본인의 자필, 정자로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워드로 작성하여 증명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사진파일을 삽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컬러로 단면 인쇄하시기 바랍니다.</p> <p>※ 한글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가장 하단에 있는 뷰어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ome > 이용안내 > 뷰어프로그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font-size: small;"> <div data-bbox="347 1167 531 1240">  02-1396 서울교육클센터 </div> <div data-bbox="571 1167 1007 1240">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안내 서비스이용약관 누리집개선의견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 COPYRIGHT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div> <div data-bbox="1018 1149 1305 1205"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뷰어프로그램 </div> <div data-bbox="1337 1167 1417 1227">  </div> </div>
질문 1-2	작성일자는 언제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본인이 해당 서류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3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p>주소는 원칙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p> <p>다만, 예외적으로 현재 거주지 주소와 다르거나 임용 후 거주 예정지가 다를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른 주소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p> <p>또한,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주소 또는 연락처(휴대전화) 변경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담당부서(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02-399-92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질문 1-4	‘학력’란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p>먼저, 학력은 가장 위 칸부터 아래로 최종학력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 고등학교 - 중학교 순으로 작성. [작성예시] 참조)</p> <p>다음, 입학 및 졸업일(또는 수료일)도 [작성예시]와 같이 년, 월까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정고시 학력 인정의 경우, 최종 취득 학력부터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p> <p>마지막으로, 대학교 편입 또는 대학원이 최종학력일 경우 서식에 줄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p>
질문 1-5	‘자격·면허’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p>자격(면허)증은 응시 자격요건으로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고 있는 사서, 시설 관리 직렬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질문 1-6	‘상벌’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p>본인의 이전 경력 중 공무원 재직 시 포상/서훈 및 징계/형벌 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p>민간기업 등 공무원 재직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합니다.</p>
질문 1-7	‘경력’에는 민간기업 근무 경력도 포함되나요?
답변	<p>‘경력’에는 민간기업이 아닌 공무원 경력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p>단, 호봉과 관련되는 경력은 별도의 서식(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질문 1-8	응시원서 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p>응시원서 접수 이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응시원서와 다른 경우 별도의 서식(인적사항 변경신청서)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향후 임용후보자등록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발령받은 부서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p>
질문 1-9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p>‘응시원서 부분 첨부란’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와 연결된 장(페이지)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작성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가족(부, 모, 배우자, 자녀 등)·형제·자매 등의 관계와 연락처를 작성하지만, 연락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소재를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 등의 연락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p>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질문 2-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담당 의사)이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 예정 직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질문 2-2	군 복무중 의병제대 또는 특정 질병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에 특정 질병으로 인해 의병제대를 했거나,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2-3	판정보류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반드시 처음 신체검사를 받은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최초 신체검사와 재신체검사 검진기관(병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판정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서 판정보류에 해당하는 질환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검진기관(병원)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질문 2-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검진기관에서 구(舊) 서식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검진받은 기관에서 예전 서식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판정했음” 이라는 문구와 검사자(담당의사) 란에 성명과 서명 또는 인, 검진기관의 장 란에 검진기관명, 검진기관 직인 또는 검진기관의 장 서명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2-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건강검진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직무특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호봉

질문 3-1	호봉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과 기타 경력(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임시교원 및 기간제 교원 경력 등)은 경력인정 환산율에 따라 인정됩니다.</p> <p>민간에서 근무한 경력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 인정됩니다.</p> <p>※ [붙임7] 참고자료의 경력종류별 호봉인정률 및 직렬별 관련 자격증 참고</p>

4

임용 유예

질문 4-1	임용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p>임용후보자 등록 시 별도의 서식(임용유예 신청서)과 관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의사진단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p> <p>※ 임용유예란 임용후보자 중 군 입대,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임신 혹은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임용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입니다.</p> <p>※ 임용유예 허용 기간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인 공개채용은 2년, 경력채용은 1년의 범위 이내이며,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질문 4-2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 하려고 하는데 임용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p>임용유예 요건인 “학업의 계속“은 현재 진행 중인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용후보자 등록 후 새로이 시작하는 학업의 경우는 임용유예가 승인되지 않습니다.</p>

질문 4-3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간 임용유예 를 할 수 있나요?
답변	<p>신규임용후보자는 3년간 임용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p> <p>「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2(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같은 법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유예는 공개 경쟁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인 2년(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은 유효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2년의 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고 임용을 받아야 합니다.</p>

5 ▶ 향후 일정(신규자 교육, 임시직 근무 등)

질문 5-1	임용 전 교육은 언제인가요?
답변	<p>신규임용예정자 공직적응과정(가칭) 연수는 10월에 진행 예정이며, 확정된 교육 일정은 해당 연수기관에서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p> <p>단,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훈련은 임용유예 등과 관계없이 지정된 일정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p>

질문 5-2	임시직 근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p>임용후보자 중 우리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임시직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의 서식(임시직 근무 희망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p> <p>다만, 임시직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희망자에 대한 정보는 우리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안내하고, 대상자 선정 결과 및 근무지는 각급 기관에서 본인에게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p> <p>※ 임시직 근무 희망자 참고사항 (신규연수 이후 11월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 경력인정: 한 기관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시 경력 50% 인정

질문 5-3	신규공무원 발령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p>신규공무원은 신규임용예정자 공직적응과정(가칭) 교육을 거친 후,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발령받습니다.</p> <p>※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발령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발령: 매년 1월 1일, 7월 1일 - 수시발령: 그 외 결원상황에 따라 정기발령일 이외에도 발령 가능 - 발령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 안내
질문 5-4	신규공무원 발령지는 어디인가요?
답변	<p>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시 기재한 희망 지역과 주소지 등을 참고하여 발령지를 결정하지만, 각 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별 결원 상태와 임용후보자의 성적순위에 따라 실제 발령지와 희망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질문 5-5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재직 중인 직장에 사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p>임용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임용이 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용일을 통보받은 이후 그 임용일 전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p> <p>※ 현재 타 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더라도 우리교육청 임용후보자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우리교육청 임용 전까지 면직처리를 완료해야함</p>